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I. 목적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제39조부터 제41조, 제76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7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변경등록·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동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II. 대행자의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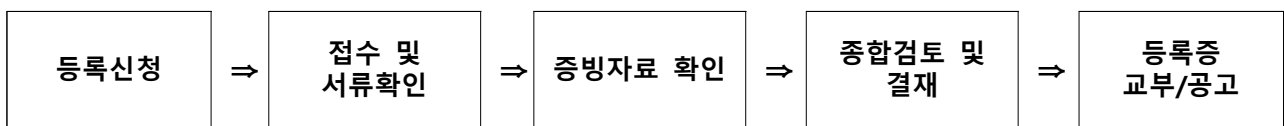
1. 등록 요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2조의2 별표 3, 같은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9조

2. 등록 절차

방재관리대책대행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하며, 검토 과정에서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함

- 가. 등록신청
- 나. 접수 및 서류검토
- 다. 증빙자료 확인
- 라. 종합검토 및 결재
- 마. 등록증 교부·공고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3. 등록 신청

법 제76조 및 영 제7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협회에 신청

4. 접수 및 서류검토

등록신청을 받은 협회의 장은 영 별표 3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

가. 구비서류

- 1) 대행자 등록 신청서(규칙 별지 제5호서식)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3) 사업자등록증
-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 계약서(임대의 경우만 해당)
- 5)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 6)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기술인력 확보 관련 확인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별지 제1호서식]
-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이수한 전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 기술인력의 재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 방재전문인력인증서 사본 및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인증서 취득 후 3년 경과자만 해당)

나) 실무경력 관련 확인서류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공무원 경력증명서(공무원 출신 기술인력만 해당)
- 그 외 법령에서 정하는 경력증명서

7) 대행자 등록의 결격 사유 해당여부 확인서류

- 대행자(대표) 및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 자의 법 제39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나. 기본요건 검토

- 1) 구비서류 첨부여부
- 2)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다. 대행자 등록요건 적합여부 검토

1) 대행자 소재지 확인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 계약서

2) 기술인력 확인

| 구 분 | 기술사급 | 기사급 | 비 고 |
|------------|------|------|----------------------|
| 필수인력 | 2명 | - | |
|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 1명 | 2~3명 | 기사급은 2개 업무분야까지 중복 가능 |

가) 일반기준 검토

- 대행자가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개설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 분야 연구소·법인으로 등록된 기관·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기술인력 보유현황[별지 제1호서식]이 영 별표 3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
- 국가기술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으로 자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재직증명서류 등으로 기술 인력의 사무실 상근 여부 확인
- 영 제58조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취득여부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기술인력에서 제외
- 타 업체 이중 취업여부 확인
 - 타 회사 근무여부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서(전체이력)에서 이중 가입여부를 확인
 - 동일인이 2종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1종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 다른 대행자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대행업체 퇴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확인서)로 대행자 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 처리

나) 관련전공 및 자격 검토

- 기술인력의 관련전공 또는 자격이 영 별표 3의 대행자 인력 확보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관련전공의 인정방법
 - 학과의 신설, 개명 등으로 인하여 영 별표 3에 따라 학과명 구분이 불분명한 학과에 대하여는 당해학과의 교과과정 및 자격의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관련 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과의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다) 경력자의 실무경력 검토

- 건설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전공분야 업무의 참여기간 합산
- 공무원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확인하고 재난관리 관련 부서에서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무경력 인정

3) 대표자 등의 결격사유

-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에 대한 신원조치를 실시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자연재해대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현지 확인(필요시)

가. 신원확인

법 제39조에서 정하는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신원 확인

나. 기술인력 확인

- 1) 국가기술자격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본인여부 확인
- 2) 실제 기술인력이 근무하는지 확인
- 3) 지나친 자료요구로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다. 사무실 확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서류상의 소재지와 일치여부 확인

라. 기타

- 1) 현지 확인 등을 위해서는 방문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장방문 통보서를 업체에 통보해야 함.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함
- 2) 현지 확인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지도·설명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함

- 3) 현장에서 즉시 보완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미한 미비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지도 후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현지 확인에 갈음할 수 있음
- 4) 대행자 등록시 현지 확인은 최대한 지양하고 서류만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되, 현지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6. 종합검토

가. 등록신청 결과보고서 작성

- 1)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필요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검토결과보고서 작성

나. 등록여부 판정

1) 등록

- 소재지, 기술인력,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신원확인 후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행자로 등록

2) 보완요구

- 등록요건에 경미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유 및 기한을 명시하여 보완 요구
- 보완요구 시에는 모든 미비사항을 신청인이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제시하여 1회의 보완요구로 완료될 수 있도록 유의

3) 반려

- 등록요건에 중대한 미비사항이 있고 이를 단시일 내 보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을 명시하여 반려

7. 등록

가. 대행자 등록증 교부

- 1)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증 교부(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 2) 대행자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통보

가) 법 제40조 및 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대행자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영 별표 4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

- 다른 방재관리대책업무의 대행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내용을 보존할 것
-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업무의 전부를 하도급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법 제42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대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통보

- 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법 제39조 제1호 또는 법 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대행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휴업한 사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개한 경우
- 방재관리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관리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나. 등록사항에 대한 공고

가)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

- 대행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상호 및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대행자 인적사항
- 사무소 소재지
- 대행업무 분야
- 대행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

다. 교부대장 작성, 서류 분류 및 보관

- 등록 관련서류는 독립된 화일에 편철하여 분류·보관

III.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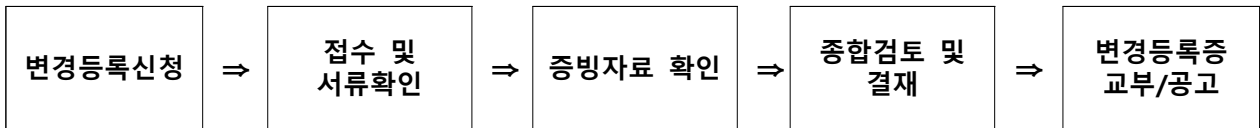
1. 변경등록 요건

법 제38조 및 제39조, 영 제32조의3, 규칙 제10조

2. 변경등록 대상

- 가. 대행자의 명칭이나 대표자 또는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
- 나.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변경

3. 변경등록 절차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4. 변경등록 신청

법 제76조 및 영 제7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협회에 신청

5. 접수 및 서류검토

가. 구비서류

- 1) 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규칙 별지 제6호서식)
- 2) 대행자 등록증
- 3) 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나) 사업자등록증
 -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4)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 계약서(임대의 경우만 해당),
- 5) 기술인력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 가) 변경된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재직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나. 기본요건 검토

- 1) 구비서류 첨부여부
- 2)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다. 서류검토 및 변경등록

- 1) 대행자 변경등록요건 적합여부 검토 및 현지확인(필요시)
- 2)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은 등록시의 업무처리요령에 준하되, 변경사항만 처리

6. 종합검토

가. 등록신청 결과보고서 작성

- 1) 서류검토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토결과보고서 작성

나. 변경등록 여부 판정

- 1) 변경등록
 - 변경등록 신청 내용에 따라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경등록 승인
- 2) 보완요구
 - 변경등록 요건에 경미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유 및 기한을 명시하여 보완 요구
 - 보완요구 시에는 모든 미비사항을 신청인이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제시하여 1회의 보완요구로 완료될 수 있도록 유의
- 3) 반려
 - 변경등록 요건에 중대한 미비사항이 있고 이를 단시일 내 보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을 명시하여 반려

7. 변경 등록

가. 대행자 변경등록증 교부

- 1) 대행자 등록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기재 후 변경등록증 교부
- 2) 대행자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통보

나. 변경등록 사항에 대한 공고

가)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

다. 교부대장 작성, 서류 분류 및 보관

- 변경등록 관련서류는 독립된 화일에 편철하여 분류·보관

IV. 대행자 업무 휴업·폐업·재개의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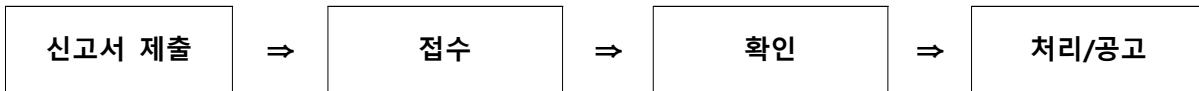
1. 업무의 휴업·폐업·재개 신고

법 제41조, 규칙 제11조

2. 휴업·폐업·재개 신고 대상 및 절차

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법 제76조 및 영 제7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협회에 신청

나. 업무 재개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 완료된 후 신고하여야 한다.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3. 휴업·폐업·재개 신고 시 구비서류

대행자 업무 휴업·폐업·재개 신고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

4. 휴·폐업·재개 신고의 처리

가. 서류검토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토결과보고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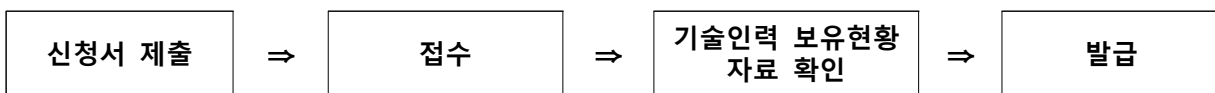
나. 협회의 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재개 신고를 받으면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행자 등록사항 변경에 대한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

다.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휴업한 사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단, 10일 이내에 신고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V.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발급

1. 발급신청 절차

가. 등록업무별 기술인력 현황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법 제76조 및 영 제7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협회에 신청



※ 처리기한 : 즉시(3근무시간 이내, 중식시간 제외)

2.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대행자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3. 증명서 발급

가. 증명서 발급

협회의 장은 대행자의 기술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대행자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기술인력 등록현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나. 발급양식

대행자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별지 제9호서식]

VI. 행정사항

1. 협회의 장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등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 제40조 및 제42조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 보고
2. 협회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는 즉시 대행자등록증에 행정처분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이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
3. 협회의 장은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현황 등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업무 현황, 통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협회의 장은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된 각종 자료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VII. 부칙

1. 이 지침은 2021. 1. 1.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른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 성명 (상호 또는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대표자 성명 | 설립일 | |
| | 주소 전화번호(FAX, E-mail): | | |

| | |
|------|---|
| 등록사항 | <p>업무 분야</p> <p>[]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p> <p>[]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p> <p>[]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p> <p>[]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p> <p>[]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p> <p>[]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업무</p> <p style="padding-left: 20px;">[] 1) 풍수해 부문</p> <p style="padding-left: 20px;">[] 2) 지진 부문</p> <p>[]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p> |
| | <p>기술인력 총 () 명</p> <p style="padding-left: 40px;">기술자격자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p> <p style="padding-left: 40px;">학력·경력자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p>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p>1.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p> <p>2. 기술인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p> <p style="padding-left: 20px;">가.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p> <p style="padding-left: 20px;">나. 기술인력의 재직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p> | 제26조의2에 따른 수수료 |
|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 <p>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p> <p>2. 사업자등록증</p> <p>3.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p> <p>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p>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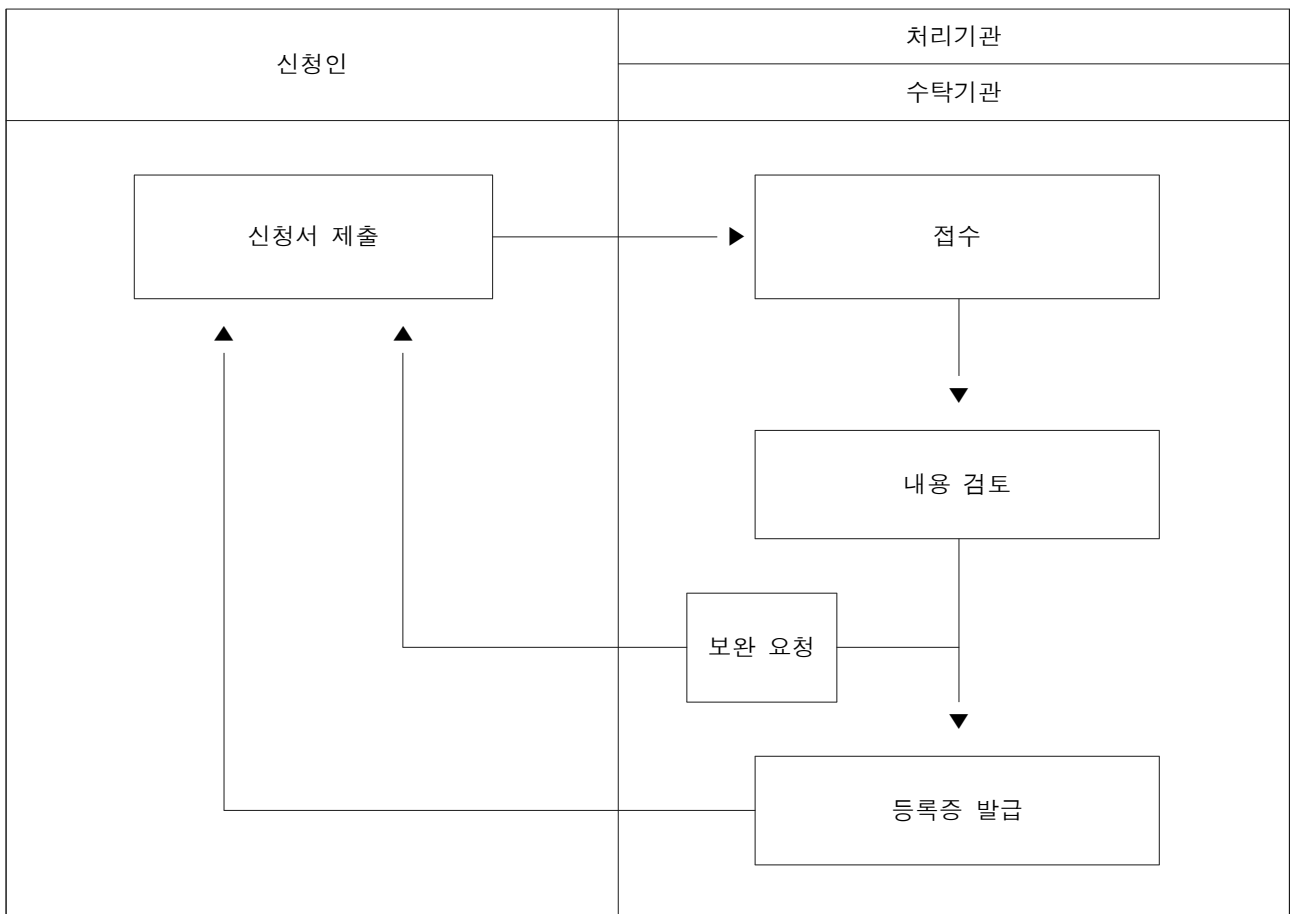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등록번호 제 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명칭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FAX, E-mail):

업무 분야

-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 []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
- []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 []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업무
 - [] 1) 풍수해 부문
 - [] 2) 지진 부문
-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등록 연월일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변경사항>

| 연월일 | 내 용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처분사항>

| 연월일 | 내 용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 | | |
|-----|----------|-------------------|--|
| 신청인 | 등록번호 | | |
| | 명칭 또는 상호 |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
| | 소재지 | 전화번호(FAX, E-mail) | |

| | 변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연월일 | 변경 사유 |
|-------------|-------|------|------|--------|-------|
| 변경 등록 사항 | | | | |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절지(80g/m²)]

| 첨부서류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2.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재직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 제26조의2에 따른 수수료 |
|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 1. 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 2.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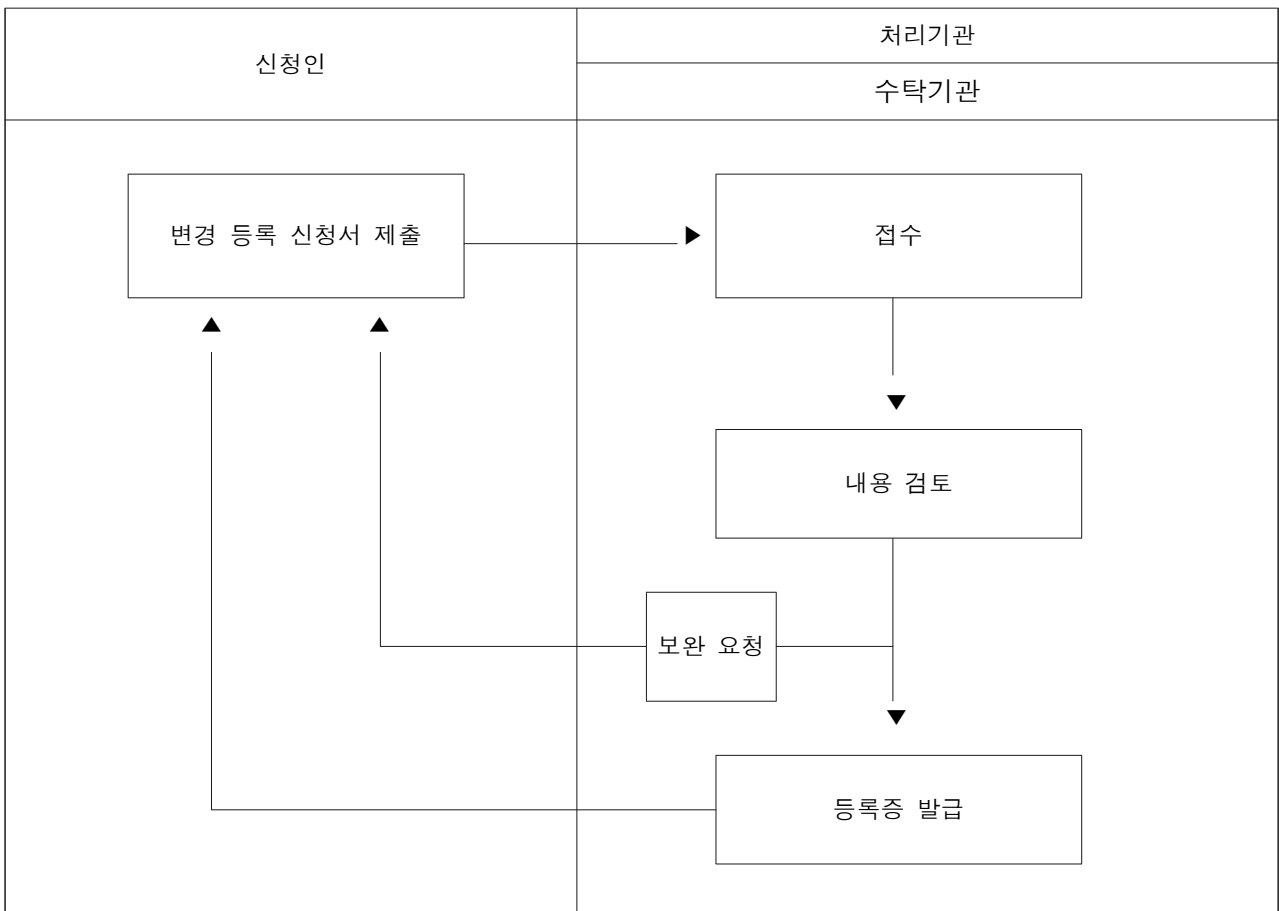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

[] 업무 휴업
 [] 업무 폐업 신고서
 [] 업무 재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
|------|-----|-----|------|-----|

| | | | |
|-------|---------------------|-----|--|
| 신 고 인 | 상호(명칭) | | |
| | 등록번호 | 등록일 | |
| | 대표자 성명 | | |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휴업기간 · 폐업일 또는 업무 재개일

사유

비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 휴업, [] 업무 폐업, [] 업무 재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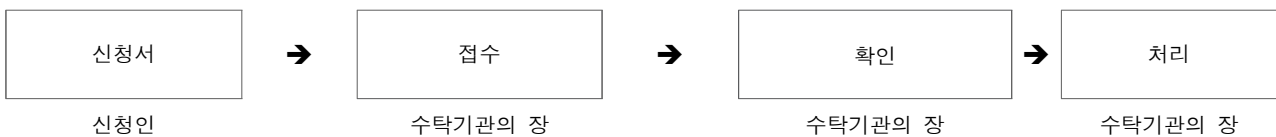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휴업, 폐업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한 경우 비고란에 분실사유 기재) | 수수료 없 음 |
|------|--|----------------|

처 리 절 차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기술인력 보유현황

1. 대행자 일반현황

| | | | |
|----------|--|------------------|--|
| 명칭 또는 상호 | | | |
| 대표자 성명 |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소재지 | | | |

2. 기술인력 확보현황

| 구분 | 인원수 | 성명 | 기술자격 또는 경력사항 | 비고 |
|-------------|-----------------------------|----|--------------|----|
| 1) 필수인력 | | | | |
| 2) 분야별 추가인력 | ①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 | | |
| | ②자연위험개선 지구 및 급경사지재해예방 관련 업무 | | | |
| | ③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소하천 정비 관련 업무 | | | |
| | ④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 | | | |
| | ⑤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 | | |
| | ⑥비상대처계획 수립(풍수해부문) 업무 | | | |
| | ⑦비상대처계획 수립(지진부문) 업무 | | | |
| | ⑧소규모공공시설 관련 업무 | | | |
| 계 | | | 분야 명 | |

■ 첨부서류 : 기술자별 기술자격 및 학·경력을 증명할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민원사무의 명칭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
2. 이용기관 명칭 : 특수법인 한국방재협회
3. 이용사무(이용목적) : 결격사유 유무 조회
4. 공동이용 행정정보 : 결격사유 유무 조회

5.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사업장 방문 통보서

| 구 분 | 내 용 |
|---------------------|--|
| 방문일시 | |
| 사업장명 |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방문목적 | |
| 방문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통보서 사본 수령자 (사업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사업장 방문 확인서

1. 대행자 일반현황

| | | | |
|----------|--|------------------|--|
| 명칭 또는 상호 | | | |
| 대표자 성명 |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소재지 | | | |

2. 확인사항

| | |
|----------|--|
| 대행자 결격사유 | |
| 기술인력 확인 | |
| 사무실 확인 | |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서명 또는인)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서명 또는인)

대행자 신규등록 신청사항 검토보고

□ 등록사항

| | | | | |
|------|------------|--------|----------------------|------------------------------|
| 신청인 | ① 명칭 또는 상호 | | ② 설립 일자 | |
| | ③ 대표자 성명 | | ④ 법인(주민) 등록번호 | |
| | ⑤ 사무소 소재지 | | ⑥ 전화번호 (FAX, E-mail) | |
| 등록사항 | ⑦ 업무분야 | | | |
| | ⑧ 기술인력 | 총 ()명 | 기술자격자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 | | 학·경력자 |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
| 등록일자 | 년 월 일 | 등록번호 | 제 호 | |

□ 등록요건 검토

| 검토 항목 | 검토 사항 | 적합 여부 |
|--|-------|-------|
| 대행자 등록사항(대표자, 상호, 소재지 등) 적합여부 | | |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기술사사무소, 방재분야 연구소 등 해당여부 | | |
| 대행자등록 결격사유(법 제39조) 해당여부 | | |
| 대행자 등록 업무분야 및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보유여부 | | |
| 기술인력의 이중취업 여부 | | |

□ 기술인력 확보사항 검토

| 업무분야 | 기 술 인 력 | | | 인증서 보 유 | 확인사항 | 적합 여부 |
|------|------------|---------|------|------------|------|----------|
| | 성 명 | 기 술 자 격 | 전공분야 | | | |
| 필수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분야 ()명 | | | | | |

□ 검토의견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대행자 신규 등록 신청서 등을 검토한 결과 등록요건에 적합하므로 처리하고자 함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사항 검토보고

□ 등록사항

| | | | | | |
|-------|------------|--------|----------------------|------------------------------|-----|
| 신청인 | ① 명칭 또는 상호 | | ② 설립 일자 | | |
| | ③ 대표자 성명 | | ④ 법인(주민) 등록번호 | | |
| | ⑤ 사무소 소재지 | | ⑥ 전화번호 (FAX, E-mail) | | |
| 등록사항 | ⑦ 업무분야 | | | | |
| | ⑧ 기술인력 | 총 ()명 | 기술자격자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 | | | 학·경력자 |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 |
| 등록 일자 | 년 | 월 | 일 | 등록번호 | 제 호 |

□ 변경등록 사항

| 변경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일자 | 변경사유 |
|------|------|------|------|------|
| 대표자 | | | | |
| 상 호 | | | | |
| 소재지 | | | | |
| 기술인력 | | | | |
| 분야추가 | | | | |

□ 변경등록 요건 검토

| 변경항목 | 검토 항목 | 검토 사항 | 적합 여부 |
|----------------|--|-------|-------|
| 대표자 | 대표자 결격사유 | | |
| | 대행자 등록사항 적합여부 | | |
| 상 호 | 상호 변경 적합여부 | | |
| 소재지 | 소재지 변경 적합여부 | | |
| 기술인력/ 분야추가 | 기술인력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보유 여부 | | |
| | 기술인력의 이중취업 여부 | | |
| | 기술인력 적합 여부 | | |
| 변경등록신청 기간준수 | 대행자 등록사항 변경사유 발생 경과 (30일내 변경신청 여부) | | |

□ 검토의견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신청에 따라 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 등을 검토한 결과 등록요건에 적합하므로 변경 처리하고자 함

※ 붙임 : 기술인력 변경사항

[붙임]

□ 기술인력 변경사항

| 등록분야 | 변경 전 | | | | 변경 후 | | | |
|--|------|------|------|-----------|------|------|------|------|
| | 기술인력 | | | 인증서 보유 | 확인사항 | 기술인력 | | |
| | 성명 | 기술자격 | 전공분야 | | | 성명 | 기술자격 | 전공분야 |
| 필수인력 | | | | | | | | |
| 재해영향평 가등의 협의 업무 | | | | | | | | |
|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및 급경 사지 재해예 방 관련 업무 | | | | | | | | |
| 자연재해저 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 | | | | | | | |
| 우수유출저 감대책 관련 업무 | | | | | | | | |

| 등록분야 | 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
| | 기술인력 | | | 인증서 보유 | 확인사항 | 기술인력 | | |
| | 성명 | 기술자격 | 전공분야 | | | 성명 | 기술자격 | 전공분야 |
|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풍수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지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분야 ()명 | | | | | ()분야 ()명 | | |

대행자 업무의 휴업·폐업·재개 신고사항 검토보고

□ 등록사항

| | | | | | |
|-------|------------|--------|-------|------------------------------|--|
| 신청인 | ① 명칭 또는 상호 | | | ② 설립 일자 | |
| | ③ 대표자 성명 | | | ④ 법인(주민) 등록번호 | |
| | ⑤ 사무소 소재지 | | | ⑥ 전화번호 (FAX, E-mail) | |
| 등록사항 | ⑦ 업무분야 | | | | |
| | ⑧ 기술인력 | 총 ()명 | 기술자격자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 | | | 학·경력자 |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 |
| 등록 일자 | 년 월 일 | 등록번호 | 제 호 | | |

□ 신고 사항

| 신고사항 | 기간 또는 일자 | 사유 | 비고 |
|------|----------|----|----|
| 휴업 | | | |
| 폐업 | | | |
| 재개 | | | |

□ 신고사항 검토

| 신고사항 | 검토 항목 | 검토 사항 | 적합 여부 |
|------|-------|-------|-------|
| 휴업 | | | |
| 폐업 | | | |
| 재개 | | | |

□ 검토의견

-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 휴업·폐업·재개 신고에 따라 대행자 업무 휴업·폐업·재개 신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므로 처리하고자 함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등록번호 | | |
| | 명칭 또는 상호 |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소재지 | 전자우편 | |
| 용도 | | 신청부수 | () 부 |

| | |
|------------|--|
| 신청 업무분야 | <input type="checkbox"/>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input type="checkbox"/>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input type="checkbox"/>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input type="checkbox"/>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 <input type="checkbox"/>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input type="checkbox"/>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업무 <input type="checkbox"/> 1) 풍수해 부문 <input type="checkbox"/> 2) 지진 부문 <input type="checkbox"/>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없음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 | | | | |
|----------|------|----|------|----|----|
| 명칭 또는 상호 | | | 등록번호 | | |
| 업무분야 | 보유현황 | 성명 | 등록일자 | 자격 | 비고 |
| 필수인력 | ()명 | | | | |
| | | | | | |
| | | | | | |
| | ()명 | | | | |
| | | | | | |
| | | | | | |
| | ()명 | | | | |
| | | | | | |
| | | | | | |

주) “등록일자”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